

2026년도 기능성표시식품개발 기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와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내 식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능성표시식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시제품 제작 및 인허가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 등을 활용한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사업비 집행은 10월 말까지 완료, 정산보고는 11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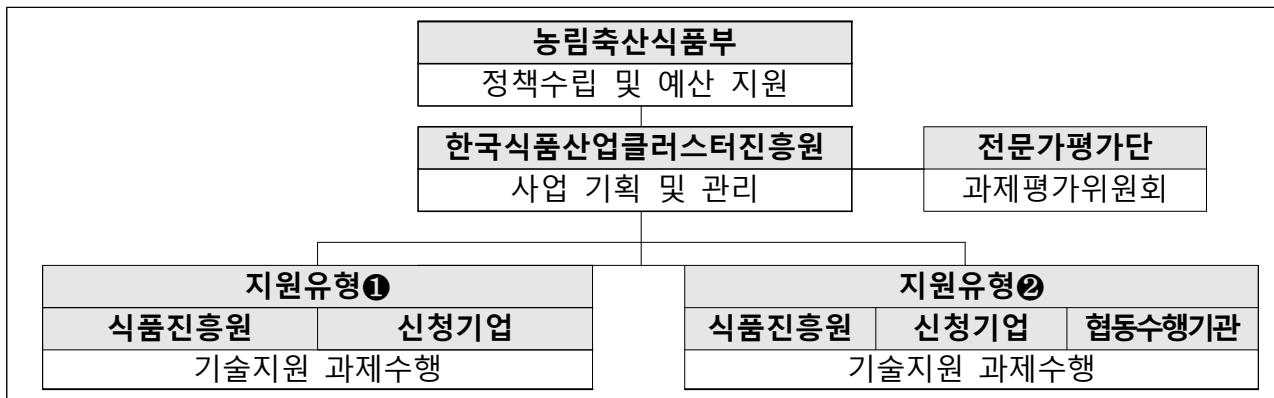
□ 사업비 지원규모: 기업별 최대 19.5백만원

* 지원금 기준

□ 사업비 구성: 지원금 65% 이내, 기업부담금 35% 이상*(현물 50%이내 인정)

* 식품진흥원 기술지원사업 지원한도(70백만원)를 적용하지 않음

- 추진체계: 식품진흥원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직·간접 지원



○ 세부역할

구분	역할
식품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 사업공고, 모집, 평가, 선정 등 · 사업 관리, 사업 직·간접 수행 * 직접 수행: 식품진흥원 인력 및 장비 활용 / * 간접 수행: 외부 기관 활용 등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보고회(중간/최종) · 사업수행, 정산·결과보고
협동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공동수행 가능 · 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보고회(중간/최종) * 협동수행기관 자격 요건 확인 필수 ([참고] ⑥ 신청자격 및 제한) · 사업수행, 정산보고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예산 900백만원 이내, 지원 과제수 30개 이내
- 공고기간: 2025. 12. 30.(화) ~ 2026. 1. 19.(월), 22일간
- 접수기간: 2025. 1. 8.(목) ~ 2026. 1. 19.(월), 18:00까지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내용: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및/또는 협동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9.5백만원
* 식품진흥원 기술지원사업 누적지원금액에 따른 지원한도(70백만원)를 적용하지 않음

4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한도
기능성표시식품개발	- 기업 제품 유형에 적합한 기능성표시식품 원료 추천·공급 지원 등 -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절차 교육, 시제품 개발 컨설팅, 시험제조·분석 및 검증(기능성분, 안전성 등) 등 직·간접 지원	19.5백만원 이내
	- 표시·광고 자율심의 신청을 위한 제출 절차 교육 및 제품 표시사항 사전 검토,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5

추진절차(안)

구 분	내 용	일 정(안)	비 고
공 고	2026년도 사업 공고	'25. 12. 29.(월)	식품진흥원
사업설명회	사업 소개 및 신청안내, 상담 등	'26. 1. 13.(화)	식품진흥원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26. 1. 8.(목) ~'26. 1. 19.(월)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사전검토	필수제출서류 구비여부 검토 * 선정규모의 3배수 이상일시 서면평가 실시	'26년 1월 중	식품진흥원
발표평가	과제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평가	'26년 2월 1주차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안내	선정평가 결과안내	'26년 2월 중	디지털식품정보 플랫폼
협약체결	선정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 후 협약체결	'26년 2~3월 중	식품진흥원·선정기업

6

신청자격 및 제한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협동수행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기초(특정 시 단위)자치단체 및 특수목적(지역의 특정분야) 연구기관
-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붙임 6] 참고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적인 대표자 또는 기업
 - * 단,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7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을 선행
 - * 신용보증기금이 개발한 빅데이터, 혁신기술 융합 AI 기업진단 분석 서비스
- 이후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www.foodpolis.kr/dfi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절차>

Step 1	Step 2	Step 3
신용보증기금 BASA(www.basadata.com) 기업회원 가입 및 경영진단 신청	식품진흥원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www.foodpolis.kr/dfip) 접속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완료 후 사업 신청
Step 4	Step 5	Step 6
[지원사업]-[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에서 신청하실 사업내용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사업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첨부	[등록] 클릭 지원신청 완료,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목록]에서 신청내역 확인 및 수정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2
선택 제출	3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4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①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 우수 수료증 ②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중소기업확인증 ③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④ (국산농산물 활용) 주원료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출하증명서 등 ⑤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통계진흥원 혹은 무역협회의 실적증명, 발급기관의 공식서류만 인정)	붙임 4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

□ 유의사항

- 기술지원계획서 내 기술료 및 매출액, 수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사업비의 지원 · 부담 기준 준수
 -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8

선정기준 및 절차

□ 사전검토

-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가

□ 서면평가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수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발표 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
- 과제 필요성, 수행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3배수를 선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발표평가

- 과제의 필요성, 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

- 평가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주체: 선정평가위원회(외부평가위원 5인 내외)
- 선정결과: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조회 * 메뉴: [마이페이지] → [지원사업 신청목록]

□ 선정기준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붙임 5] 참고
- 동점일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우선 지원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공고문 [붙임 4]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미제출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에만 적용

9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식품진흥원 '기업맞춤형지원사업 운영 규칙', '기술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재조치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기술이전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유의사항

- 식품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협동수행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는 신청서 작성부터 선정평가까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선정평가 미 참석시 탈락될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및 신청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시, 동일한 내용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체결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시 사업목표 및 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시에 제외됨

- | |
|--|
| ①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
|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 ③ 신청기업, 협동수행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
| ④ 신청한 기술지원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⑤ 기술지원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⑥ 제안한 기술지원계획서에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문의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 온라인 신청방법 등 시스템 활용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helpdesk@foodpolis.kr	
■ 기술지원			
- 기능성표시식품개발	기능성식품부	(지원내용 관련)	063-720-0644, lkh5451@foodpolis.kr
		(신청절차 관련)	063-720-0648, khyein999@foodpolis.kr

[붙임1] 사업신청서 및 기술지원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3] 가점적용신청서

[붙임4] 가·감점기준

[붙임5] 선정평가서

[붙임6] 사유별 제제 기준

【붙임 1】

접수번호								
기능성표시식품개발 기술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2026년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기술지원사업							
과제명								
사업기간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							
사업비 (단위:원)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기업부담금		
	비목	총계	현금	현물	현금	현금	소계	현금
	금액							
구성	담당자	기업/기관명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참여기업	책임자							
	실무자							
협동수행기관 (해당시 작성)	책임자							
위와 같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능성표시식품 개발 기술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 (인)								
협동수행기관명 대표자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기술지원 계획서

(참여기업명 000) 기술지원 계획서

참여기업 정보	기 업 명		대표자명	
	책임자/직급(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협동수행 기관정보	기 관 명	해당없을 시 삭제	대표자명	
	책임자/직급(직위)		담당자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요약문

사업명	2025년 기능성표시식품개발 기술지원사업							
과제명	예) (기능성원료명)를 이용하여 (기능성원료 효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0000 제품 개발							
총사업비 (단위:원)	구분	총사업비			보조금	기업부담금		
	비 목	총계	현금	현물	진흥원	협동 수행	참여기업	
	금 액							
수행기간	2025. 00. 00. ~ 2025. 00. 00. (총 개월)							
과제 목표	1. 2. 3.							
필요성	1. 2. 3.							
수행 내용	1. 2. 3.							
기대 효과	1. 2. 3.							
성과 목표	1. (필수) 기능성표시식품 품목제조보고 0건 2. (필수)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심의 신청 0건 3. (필수)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심의 등록 0건 4. (선택) 기술적 성과물(지식재산권, 제조/공정개발보고서, 공인보고서/성적서 등) 5. (선택) 경제적 성과물(매출증명, 수출계약서, 원가절감보고서 등)							

세 부 추 진 계 획 서

1. 기업 현황

- ①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서술
 - '(주)00000'은 건강기능식품 중 멀티비타민·다이어트 등 제품을 제조 및 생산을 주력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신규 공장을 완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 ② 지원 사유 및 문제점 등(기업 애로사항)
 - (애로사항 1) 신규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품질관리가 어려우며, 계속적인 소비자 클레임이 지속되고 있음
 - (애로사항 2) 특히, 공정 중 000부분에서 장비 및 환경의 모니터링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불량제품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 개발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상세 서술 *** 기능성표시식품을 개발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애로사항 1)

—
—
—

○ (애로사항 2)

—
—
—

○ (애로사항 3) (사진 등 여러 가지 자료 첨부 가능)

2. 추진 계획

① 과제 목표

목 표	세부 내용	도출 결과 (정량지표)
제품 개발	0000 제품 개발	품목제조보고 0건
기능성표시식품 신청	0000 제품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신청	표시광고 심의 신청 0건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0000 제품으로 기능성표시식품 등록	표시광고 심의 등록 0건

② 수행 업무

구 분	역 할
식품진흥원	<input type="radio"/> 기능성원료 분양 또는 공급중계(사전기탁 후 중계) <input type="radio"/> 0000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input type="radio"/> 기능성 원료 등 시험검사 분석지원 <input type="radio"/>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심의지원
참여기업 (기업명)	<input type="radio"/> 0000 시제품 개발 및 제작 <input type="radio"/> 표시광고 심의신청용 라벨 제작 <input type="radio"/> 기능성표시식품 신청 및 등록 <input type="radio"/> 상품화 및 시장 진출(온라인- 000, 오프라인-000) <input type="radio"/> 해외 수출 시 수출 상담 및 판로개척
협동수행기관 (기업명)	협동수행기관 참여시 작성 (없을 시 삭제)

※ 역할은 간략하게 작성하며, 협동수행기관이 포함된 경우 기관(기업)명 및 역할 추가

③ 추진 일정

추진기관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식품 진흥원												
참여 기업												

3. 과제 수행계획

* 기술지원 내용 및 단계별 수행방법, 선행 연구결과, 참여기업(협동수행)과 진흥원의 역할 및 구성 등

○ 최종목표

-

○ 업무분장

-

○ 선행 연구결과

-

○ 단계별 수행방법(상세히 작성요망)

-

○ 시제품 활용계획(예정)

-

4. 과제 성과 활용

※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제품 출시 계획 등), 과제의 산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

○ 기술적 성과

-

○ 경제적 성과

-

5. 소요 비용

① 사업비 총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보조금	기업 부담금		
		합계	현물	현금

② 세부 내역(총액)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세목	보조금*		기업 부담금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현물	인건비 *협동수행에 한함					
	재료비					
현금	인건비					
	재료비					
	활동비					
사업비 총액						

* 비목 내 예산변경이 가능하나, 총사업비의 20%이상은 진흥원 승인 후 집행(부가가치세는 제외)

③ 세부 내역(공동참여 기관별)

* 협동수행기관, 기업 등 참여 기관은 각 사항에 맞춰 세부내역을 작성할 것,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 가능

[1. 기업부담금: 0,000,000원]

– (현물)인건비: 000원 * 협동수행기관에 한함

성명	직급	월급여(원)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원)	비고
			참여종료일				
합계						0	

– (현물)재료비: 000원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현금)재료비: 000원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계					

– (현금)활동비: 000원

구분	금액(원)	세부 산출 내역
합계		
성과 활용 관리비		• 00천원×00명×00회
장비 임차비		• 000천원×00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000분석×000천원×00회

[2. 보조금: 00,000,000원]

* ‘진흥원 집행’ 부분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집행예정

** 기업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고란에 반드시 ‘기업집행’ 문구를 작성요망

– (현금) 재료비: 000원

품 명	단위	수량	단 가	금액(원)	비고
기능성 원료					원료명 작성 (진흥원 집행)
소모품					00 제작에 필요한 000, 000, 000등 (기업 집행)
합 계					

– (현금) 활동비: 000원

구 분	금액(원)	세부 산출 내역	비고
합 계			
전문가 활용비	000,000	· 중간·최종보고회, 표시광고 자문비·교육비	진흥원 집행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분석비)	000,000	· 000분석×000천원×00회	진흥원 집행

6. 기타

① 제출자료 목록

구분	제출 자료 목록
	1. 2. 3. 4.
	1. 2. 3. 4.
	1. 2. 3. 4.

② 사전 기술검토 자료 등

순	제출 자료	비고
1	· OOOO의 모니터링 자료	논문
2	· OOO개발의 사전 연구 자료	내부자료
3	·	

③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 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2개년)	20 년		20 년		
			백만원		
실무연락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기술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 선정,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선정, 협약체결, 과제 수행관리, 수요조사,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보유·이용기간	<u>5년, 미선정 기업은 심사 후 즉시 파기</u>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등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직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필서명)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3】

가점적용 신청서

세부사업명	기업 기술지원사업	신청가점	총 00점		
과제명					
신청기업		과제책임자			
가점 적용 내용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가점	신청
1	식품진흥원 지원사업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85점 이상)"로 판정을 받은 참여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접수마감일)	2년	3점	<input type="checkbox"/>
2	푸드폴리스마켓 입점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입점일 (접수마감일)	3년	2점	<input type="checkbox"/>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11에 따라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기업, 그린바이오 신고 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5	국산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기업	인증일 (접수마감일)	-	3점	<input type="checkbox"/>
6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일 (접수마감일)	3년	3점	<input type="checkbox"/>
<p>「기술지원사업 운영지침」 별표 4에 따라 기술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적용 신청서(최대 00점 적용)를 제출합니다.</p> <p>첨부. 증빙서류 0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p>					

【붙임 4】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

구 분	기 준	적용기산일 (기준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지원사업 최종평가결과 ¹⁾ 우수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평가일	2년	3점
	푸드폴리스마켓 ²⁾ 입점기업의 경우	입점일	-	2점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 우수 수료기업	수료증 발급일	2년	3점
	청년기업 ³⁾ 으로 인정받은 기업		-	3점
	푸드테크 ⁴⁾ , 그린바이오 ⁵⁾ <u>신고기업</u>	신고일	3년	3점
	국산 농산물 활용 제품 개발 기업 ⁷⁾		-	3점
	수출 실적 보유 기업 ⁸⁾	3년 이내 실적	-	3점
감점	제재조치심의위원회 ⁹⁾ 결과에 따름			
참여제한	식품진흥원의 제재조치심의위원회 및 농식품부의 국고보조금 관련 행정처분에 따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의 상한은 최대 5점, 감점의 하한은 최대 -10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하여 반영 - 참여제한기업의 제재가 식품진흥원의 제재조치 심의결과와 농식품부 행정처분이 다를 경우 농식품부의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 			

-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비즈니스지원 활성화사업, 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결과에 대하여 최종평가 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 2) 푸드폴리스마켓(<https://fmarket.or.kr/>) 입점기업
(가점적용신청서 미제출 항목으로 진흥원이 직접 부여)
- 3) 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19~39세 이하의 기업을 말함
- 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기업
- 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바이오신고 기업
-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라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7) 주원료(식품위생법 제7조)를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생산·유통 중인 기업
- 8)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보유기업
- 9) 식품진흥원 내규(「제재조치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붙임 5】

기술지원과제 선정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단위사업명	
-----	--	-----	--	-------	--

1. 종합평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과제개요 (30) 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목표 및 필요성 · 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 · 목표 설정의 명확성 · 구체성 · 정량성	10	
	- 과제 범위의 타당성 · 과제 범위 설정과 총괄 목표의 부합성 · 과제의 핵심과 추진내용 간의 연결성 · 과제계획의 신규성	10	
	- 과제 목표의 실현가능성 · 선행연구결과 등 제시된 방법의 구체성 · 과제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10	
과제수행 (40) 과제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과제 수행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기술지원계획의 합리성	15	
	- 과제 내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업(협동수행)과 진흥원 역할 및 구성의 연계성	15	
	- 사업비 규모 · 과제기간 및 과제수행 방법의 적절성 · 사업비, 과제기간, 과제 수행방법의 적절성	10	
	- 과제 성과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성과 활용 방안 및 확산 계획의 구체성	15	
과제활용 (30)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과제 성과의 산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 산업화 가능성	15	
	- 기술지원 결과의 경제 · 사회 · 지역적 파급효과		
기·감점 사항	- 최근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우수 및 불량 건수		사전 기입

합 계(총 100점)	점
-------------	---

지원규모 적정성	적정 보조금(백만원)	적정 지원기간(개월)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평가위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 6】

사유별 제재 기준

제재 사유	제재기준	비고
1. 협약 후 정당한 사유 ¹⁾ 없이 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감점 3점 (2년)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2. 정산보고 등 불성실한 대응으로 진흥원으로부터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감점 5점 (2년)	경고 1회 공문 발송 시 제재조치 사전알림
3. 지원사업 수행내용이 불량하여 중간평가결과 '중단'이나 최종평가결과가 '불량'으로 나온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사용한 사업비는 반환
4.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나. 해외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인정 금액 등의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6. 과제결과물인 지식재산권 등을 진흥원과 협의없이 등록하거나 이전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7.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료 ²⁾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제한 2년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유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5년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5 와 6]
9.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 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3년	
10.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참여제한 2년 (간접보조사업자) 참여제한 1년 (보조금수령자)	
11. 그 밖에 지원사업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이내	

- 1) 판단은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음
- ① 정부의 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로 이사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제중단을 요청한 경우
 - ②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기관)에 없을 경우
 - ④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2) 기술료는 기술이전료, 실시권을 말함